

# UNIVERSAL DECLARATION



##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선언

October 2021



## 목 차

들어가는 말	4
우리의 사명	5
제안단체	6
배 경	7
UDCPFOH	8
행 동	13
지지와 참여	14
국가별 VIP 지지 서명 현황	15
국가별 VIP 지지 서명 현황(세부)	16
UD 지지 서명 메시지	20

# 들어가는 말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선언(UDCPFOH)'은 인간의 양심, 존엄성,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엄숙한 선언입니다.

UPCPFOH는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잔혹 행위에 희생된 개인과 집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정의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인류가 중국 공산당의 전례없는 사악한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철저히 부정함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이 시기에, 누가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만행에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잔혹한 행위에 맞서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에게 강제 장기적출의 진실을 알리고 UPCPFOH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DCPFOH 운영위원회

2021년 10월



#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표는 중국의 여러 피해자 집단에게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절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모든 정부와 국제기구, 단체 및 개인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선언(UDPF0H)’은 어떤 정권이나 개인도 박탈할 수 없는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s)’를 근간으로 합니다.

인간 존엄의 불가침성 및 생명, 신체, 자유의 근본적인 보호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핵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UDPF0H는 중국공산당이 인간의 존립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 제안단체

다포(DAFOH),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대만 국제장기이식 관리협회 (TAICOT), 일본 해외원정 장기이식 조사위원회(TTRA) 등 5개 NGO가 공동으로 발의 했습니다.

다포(DAFOH)는 국제사회에 강제 장기적출의 실상을 알려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과 2017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됐고, 2019년에는 사회 정의를 위한 마더 테레사 상을 받았습니다.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는 1995년 UN 자문 지위로 설립됐으며 전 세계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와 일본 TTRA는 불법 장기이식 관행에 대한 윤리 문제를 부각하고 법률적 대응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사)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강제 장기적출 실상을 알려 국민들이 반인도적 불법 장기매매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활발한 교육 및 조사 활동, 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을 막고 사상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이 다섯 NGO는 국제 심포지엄, 의회 청문회, 인권 운동을 통해 잔혹 행위를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UDCPFOH를 제안합니다.



CAP Freedom of Conscience



Taiw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are of Organ Transplants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Korean Association for Ethical Organ Transplants



Transplant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 배 경

강제 장기적출은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지만 중국에서는 수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동의를 거치지 않고 건강한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20년 넘게, 국가 기구를 총동원해 피해자의 장기로 돈을 벌면서 의료 전문가들을 '사형 집행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강제 장기적출로 인한 주요 피해자는 파룬궁 수련인이며 그들은 장기를 적출당한 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외에도 위구르인과 기독교인들도 희생자입니다.

2016년 전 캐나다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미국의 탐사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이 결성한 국제조사단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연간 6만~10만 건의 이식 수술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런던 독립법정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각종 증거 자료 및 50여 명의 증인 진술을 토대로, "상당 기간 중국 내 양심수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매우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파룬궁 수련인과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기 판결은 UN 인권이사회 제42차 총회, 영국 상원과 외무부, 미국 국무부, 호주 외교통상부,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등에서도 심도있게 다뤄졌습니다.



# UDCPFOH

Universal Declaration on Combating and Preventing Forced Organ Harvesting

강제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

## 서 문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적인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임을 선언하였고, 이에 모든 국가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위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면, 당사국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위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위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가운데,

「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의 인권 및 인간존엄성 보호에 관한 협약: 인권과 생물의학에 관한 협약 (1997년, ETS No. 164)」 및 「인간 장기 및 조직 이식에 관한 인권 및 생물의학에 관한 보충 협약 (2002년, ETS No. 186)」을 명심하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사전 동의는 윤리적 장기기증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국제 의료기구들이 자유가 박탈된 수감자들은 자유로운 동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이들로부터 장기를 조달하는 행위는 의학윤리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과,

「UN 고문방지위원회」 및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UN 특별조사관」(이하 'UN 고문 특별조사관')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장기적출 혐의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장기이식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이식 남용 행위에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 사실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UN 고문 특별조사관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장기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실과,

「인체 장기매매 방지를 위한 유럽회의의 협약」의 목적이 특정 행위를 범죄로 적시함으로써, 생체 또는 뇌사자 장기적출이 자유롭고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뇌사자 장기적출이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 인체 장기매매를 예방하고 방지하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각국 정부 및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인체 장기매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진하는 것임을 고려하고,

2019년 런던에서 설립된 국제 독립재판소인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가, 구 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를 역임하면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기소를 주도한 바 있는 영국여왕 칙선변호사 제프리 니스 경이 재판장으로서 법정을 주재한 가운데, 중국에서 이식용 장기 공급을 위해 수감자에 대한 살해가 계속되고 있고 희생자들 중에는 투옥된 파룬궁 수련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파룬궁 수련자들과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강제장기적출이라는 반인도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장려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 조문

### 제1조

(1)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2조

(1)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2)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식용 장기를 적출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약한 수감자들을 살해하는 것은 극악하고  
용인할 수 없는 생명권 침해이다.



#### 제4조

모든 정부는 특정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형사 기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강제장기적출을 근절하고 방지하여야 한다.

#### 제5조

(1) 모든 정부는, 생체 또는 뇌사자 장기적출이 자유롭고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뇌사자 장기적출이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장기를 적출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모든 장기 공여자들은 기증에 대한 동의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위 동의서는 국제 인권 관계자들에 의하여 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 제6조

모든 정부는, 관련 국제 협약에 따라 강제장기적출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도록, 해당국가의 법질서에 따라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

모든 정부는, 관련 국제 협약 및 지역적 수단, 통일적이거나 상호적인 입법 및 각국의 국내법에 기초하여 합의된 방식에 따라, 강제장기적출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절차를 진행 하는 데 최대한 상호 협력해야 한다.

#### 제8조

모든 정부는 중국 당국(Party-State)에 대하여, 파룬궁 수련자 및 기타 양심수에 대한 탄압과 구금, 학대를 중단하고, 모든 수감자들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을 중단하며, 강제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위해 모든 구금시설과 수용소를 개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 제9조

모든 정부는

- (1) 의료인들에 대하여 환자들이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것을 촉구하고,
- (2) 의료인들에 대하여 중국 의사나 의료인에게 이식수술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국가에서 그와 같은 연수 기회를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 (3) 의학 저널들에 대하여 이식의학 분야에서 “중국 증례”에 관한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 (4) 장기·인체조직 이식 분야 해외연수를 받고자 하는 중국 의료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며,
- (5) 이식수술 분야에서 중국 의사들이 개최하는 국제 세미나, 심포지움,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 제10조

모든 정부는 강제장기적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자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 제11조

각국 또는 관할권은 환자들의 이식 서비스 접근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인체 장기와 관련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 분석 및 교환해야 하며, 보건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제12조

각국 또는 관할권은 강제장기적출의 불법성에 대하여 인식을 제고시키는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

## 제13조

본 선언의 조항들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 민족성, 재산, 출생, 성적 지향, 건강상태, 장애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 행 동

다섯 NGO는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선언(UDCPFOH)'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요청합니다.

- 독재 정권이 휘두르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 의해 심각한 인권 탄압은 쉽게 은폐되고 은밀히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되고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 강제 장기적출은 중국공산당의 가장 사악한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 수년간 국제기구, 인권단체, 정부, 전문 연구원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강제 장기적출로 인한 최대 희생자가 파룬궁 수련인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2019년 런던 '중국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위의 사실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 20세기의 수많은 전쟁과 박해가 인권과 자유, 정의를 파괴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각종 선언과 국제협약을 통해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공감대에 도달했습니다.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선언(UDPF0H)'은 70년간 구축된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s)', 인간 존엄의 불가침성 및 생명, 신체, 자유의 근본적인 보호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핵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지지와 참여

우리는 귀하가 웹사이트(UD-CP-FOH)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세계선언의 공동 서명자와 지지자가 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귀하의 지지 성명서는 다른 지지자들과 함께 웹사이트에 공개되며, 의식 있는 사람들과 단체로 구성된 결속력 있는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 Option 1

### 공동 서명자로 참여하기

온라인 질의 응답

서면 및 영상 성명 제출

## Option 2

### NGO 서포터로 참여하기

온라인 질의 응답

서면 및 영상 성명 제출

## Option 3

### 개인 서포터로 참여하기

## Contact

Email: [info@ud-cp-foh.info](mailto:info@ud-cp-foh.info)

Website: [UD-CP-FOH.INFO](http://UD-CP-FOH.INFO)

지지선언  
바로가기

<https://universaldeclarationcpfoh.net/lang/ko>



# OECD 회원국들의 '강제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 국가별 VIP 지지 서명 현황

## Individual Co-Signatories

By becoming a co-signatory you formally endorse the UDCPFHOH and agree to join a growing list of international dignitaries who have signed the Declaration.



##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 국가별 VIP 지지 서명 현황

정 계	NAME / JOB	성명 / 직업	국가
1	Jeff Backer, MN House of Representatives	제프 배커, 미국 하원의원	미국
2	Cal Bahr, MN House of Representatives	칼 베어, 미국 하원의원	미국
3	Sam Farr, Former Member of U.S. House of Representatives (D-CA)	샘 파, 전 미국 하원의원	미국
4	Brian Fitzpatrick (R-PA), U.S. House of Representatives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미국 하원의원	미국
5	Alan Keyes, PhD, Former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Affairs	앨런 케이스, 박사, 전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	미국
6	John Marty, MN State Senate	존 마티, 미국 상원의원	미국
7	Sandra Masin, MN House of Representatives	산드라 매신, 미국 하원의원	미국
8	Tim Miller, Mn House of Representatives	팀 밀러, 미국하원의원	미국
9	John Larson (D-CT), U.S. House of Representatives	존 라슨(D-CT) 미국 하원의원	미국
10	Scott Peters (D-CA), U.S. House of Representatives	스콧 피터스, 미국 하원의원	미국
11	Nels Pierson, MN House of Representatives	넬스 피어슨, 미국 하원의원	미국
12	Jay Xiong, MN House of Representatives	제이 공 미 하원의원	미국
13	John A. Hoffman, Minnesota State Senator	존 A. 호프만, 미국 미네소타 주 상원의원	미국
14	Lord Hunt of Kings Heath, House of Lords, London	영국 귀족원 히스 왕가 헌트 경 / 영국상원의원	영국
15	Lord Ranbir Singh Suri, House of Lords, London	영국 귀족원 란비르 싱 수리 경 / 영국상원의원	영국
16	Lord David Alton, House of Lords, London	영국 귀족원 데이비드 알튼 경 / 영국상원 의원	영국
17	Lord Ian McColl, House of Lords, London	영국 귀족원 이안 맥콜 경 / 영국상원의원	영국
18	Lord Alderdice, FRCPsych, House of Lords, London	영국 귀족원 앨더디스 경 / 영국상원의원	영국
19	Lord Richard Harries of Pentregarth, House of Lords, United Kingdom	영국 귀족원 펜트레가스의 리처드 해리스 경 / 영국상원의원	영국
20	Lord Bishop of St Albans, Rt Revd Dr Alan Smith, House of Lords, London	영국 귀족원 세인트앨번스 경 / 영국상원의원	영국
21	Lord Hylton, House of Lords, London	영국 귀족원 로드왕가 힐턴 경 / 영국상원의원	영국
22	Lord Hamilton of Epsom, House of Lords, London	영국 귀족원 엡섬 해밀턴 경 / 영국상원의원	영국
23	Baroness Ruth Lister of Burtersett, House of Lords, United Kingdom	버터셋의 루스 리스터 남작부인 / 영국상원의원	영국
24	Baroness Janet Whitaker, House of Lords, London	자넷 휘태커 남작부인, 영국상원의원	영국
25	Baroness Caroline Cox, House of Lords, London	캐롤라인 콕스 남작부인, 영국상원의원	영국
26	Rosie Cooper MP, Member of Parliament	로지 쿠퍼, 하원의원	영국
27	Peter Skaarup, Member of Parliament	피터 스카럽, 덴마크 국회의원	덴마크
28	Susanne Zimmer, Member of Parliament	수잔네 짐머, 덴마크 국회의원	덴마크
29	Hans Kristian Skibby, Member of Parliament	한스 크리스티안 스키피, 덴마크 국회의원	덴마크
30	Christian Juhl, Member of Parliament	크리스티안 율, 덴마크 하원의원	덴마크
31	Kenneth Kristensen Berth, Former MP, Currently Local Politician	케네스 크리스텐슨 버트, 전 덴마크 하원의원	덴마크
32	Margrete Auken, Member of European Parliament	마르그레테 아우켄, 덴마크 유럽 의회 의원	덴마크
33	Françoise Hostalier, Former Minister, Member of Parliament	프랑수아즈 호스탈리에, 전 장관, 국회의원	프랑스
34	Andre Gattolin, PhD, Senator Haut de Seine, Paris	앙드레 가톨린 박사, 프랑스 파리 오토 드 센 상원의원	프랑스
35	Josiane Corneloup, Member of Parliament	조시앙 코르넬루프, 프랑스 의회 의원	프랑스
36	Maina Sage, Member of Parliament	마이나 세이지, 프랑스 국회의원	프랑스
37	Jennifer DeTemmerman, Member of Parliament	제니퍼 드템머먼, 국회의원	프랑스
38	Vito Comencini, Member of Parliament	비토 코멘치니, 이탈리아 하원의원	이탈리아
39	Maurizio Romani, Former senator	마우리치오 로마니, 전 이탈리아 상원의원	이탈리아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 국가별 VIP 지지 서명 현황

정 계	NAME / JOB	성명 / 직업	국가
40	Lino Petazzi, Member of Parliament	리노 페타치, 이탈리아 국회의원	이탈리아
41	Mara Bizzotto, Member of European Parliament	마라 비조토 유럽 의회 의원	이탈리아
42	Andrea Delmastro Delle Vedove, Member of Parliament	안드레아 델마스트로 델레 베도브, 국회의원	이탈리아
43	Ingeborg.De.Meulemeester, Member of Parliament	잉게보리드 뮐레미스터, 국회의원	벨기에
44	Jan loones, Senator, former MP and member of the Flemish Parliament	얀 루즈, 평의원, 전 하원의원이자 플랑드르 의회 의원	벨기에
45	Sander Loones, Member of Parliament	샌더 룬스, 국회의원	벨기에
46	Bert Anciaux, Senator	버트 앙시오, 벨기에 상원의원	벨기에
47	Peteris Simsons, Former Ambassador and MP, Board Mem. of IAFPPVC	피터리스 심슨, 라트비아 IAFPPVC의 전 대사 겸 하원의원	라트비아
48	Veiko Spolitis, Former Member of Parliament, Political scientist	베이코 스폴리티스, 전 국회의원, 정치학자,	라트비아
49	Daina Kazaka, Former Member of parliament	다이나 카자카 전 라트비아 공화국 국회의원	라트비아
50	Janis Martins Skuja, Founder Latvia for Tibet, Rep. Intl Tibet Network's, Steer. Com.	야니스 마르틴스 스퀴자, 티베트를 위해 라트비아를 설립한 하원의원. 국제 티베트 네트워크	라트비아
51	Hon. David Kilgour, Former MP of Canada, Senior Fellow to the Raoul Wallenberg Centre for Human Rights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하원의원, 라울 월렌베르크 인권센터 선임연구원	캐나다
52	Hon. Salma Atallahjan, Senate of Canada	혼 살마 아틀라야젠 캐나다 상원의원	캐나다
53	Ron Lierpert, MP of Canada	론 리퍼트, 캐나다 국회의원	캐나다
54	Wybren van Haga, Member of Parliament	와이브렌 반 하가 하원의원	네덜란드
55	Martijn van Helvert, Member of Parliament	마틴 반 헬베르트, 하원의원	네덜란드
56	Thierry Baudet, Member of Parliament	티에리 보데, 국회의원	네덜란드
57	Niclas Malmberg, Former Member of Parliament	니클라스 맘버그, 스웨덴 전 국회의원	스웨덴
58	Ann-Sofie Alm, Member of Parliament	앤 소피 알름, 국회의원	스웨덴
59	Ljudmila Novak, Member of European Parliament	루드밀라 노박 유럽 의회 의원	슬로베니아
60	Petri Sarvamaa, Member of European Parliament	페트리 사르바마, 핀란드 유럽 의회 의원	핀란드
61	Eva Biaudet, Member of Parliament	에바 비아우데트, 비아우데트, 핀란드	핀란드
62	Hermann Tertsch, Member of European Parliament	헤르만 테르치, 스페인 유럽의회 의원	스페인
63	Oskar Freysinger, Former Member of Parliament	오스카 프레이징거, 전 스위스 국회의원	스위스
64	Berndatt Szel, Member of Parliament	버나뎃 쉘, 헝가리 의원	헝가리
65	Jaime Naranjo, Congressman, Member of Parliament	제이미 나란조, 칠레 국회의원	칠레
66	Dovilė Šakalienė, Member of Parliament	도빌레 샤칼리엔시, 리투아니아 국회의원	리투아니아

법조계	NAME / JOB	성명 / 직업	국가
67	David Matas, Lawy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데이비드 메이타스, 캐나다 국제 인권 변호사	캐나다
68	Carlos Iglesias Jimenez, Lawyer, Human Rights	카를로스 이글레시아스 히메네스, 인권 변호사	스페인
69	András Schiffer, Lawyer	안드라시 쉬퍼 헝가리 변호사	헝가리
70	Marina Zagors, Lawyer	마리나 자고스, 그리스 변호사	그리스
71	Elisabetta Zamparutti, Lawyer, Member, CPT, Council of Europe, Italy	엘리사베타 잠파루티, 변호사, 회원, CPT, 유럽 평의회, 이탈리아.	이탈리아
72	Guillermo Handam, Lawyer	기예르모 한담, 멕시코 변호사	멕시코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 국가별 VIP 지지 서명 현황

학 계	NAME / JOB	성명//직업	국가
73	Kirk Ellis, PhD, MS, Prof. of Humanities, College of Saint Scholastica	커크 엘리스, 박사.미국 세인트 스킨라티카 대학교 인문학과 교수	미국
74	Arthur Waldron, PhD, Lauder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of History, Uni. of Pennsylvania	아서 월드론 박사 로더 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조직부의 인터	미국
75	Kathleen Thimsen DNP, FNS, Assoc. Prof., Prog. Dir., Dr. of Nursing Practice, UNLV	캐슬린 팀슨, 마약 단속국 프로그 교수. 미국 UNLV 간호실천 박사	미국
76	Prof. Dr. Dr. h.c. Gerhard Dannecker, Universität Heidelberg, Institut für deutsches, europäisches und internationales	h.c. 게르하르트 교수, 유니. 하이델베르크, 독일 연구소, 유료 및 인터	독일
77	Gunārs Strods, Dr. paed., Assoc. prof, Rezekne Academy of Technologies	구나스 스트로즈 박사, 라트비아 레제크네 공과대학 아소크 교수	라트비아
78	Loannis Boletis, Professor of Nephrology, Med. Sch. Univ. Athens	로안니스 볼레티스, 신장학 교수, 의학 박사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	그리스

의료계	NAME / JOB	성명 / 직업	국가
79	Raymond Scalettar, M.D., D.Sc., F.A.C.P., Former Chairman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레이먼드 스칼레타, MD, DSC, FACP, 교수. GWU 의료 센터, 전 미국 AMA 회장	미국
80	Jacob Appel, MD, JD, MPH, Dir. of Ethics Education in Psychiatry, 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 Attending Physician, Mount Sinai Health System	제이콥 아펠, 의학박사, JD, MPH, 미국 Mount Sinai Health System 윤리교육학부	미국
81	Nancy B. Cabelus, DNP, APRN, AFN-BC, Adjunct Prof, Quinnipiac Uni., Founding Member of the International Forensics Nursing Assoc.	낸시 비. 카벨루스, DNP, APRN, 퀴니피악 대학교 겸임교수	미국
82	Bryan E. Dowd, PhD, Prof.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Uni. of Minnesota	브라이언 E. 다우드, 미네소타 대학 보건 정책 및 관리 교수, 박사	미국
83	Lucia Dunn, PhD, SSI Research Prof., Uni. of Ohio	루시아 던 박사 SSI 연구,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	미국
84	Eric Goldberg, MD, FCPP, Senior Medical Director, Global Pharmaceutical Corporation	에릭 골드버그, MD, FCPP, 미국 글로벌 제약 회사 선임 의료 책임자	미국
85	Joseph E. Gutierrez, MD, MA, FACS, FICS, FRSM, Transplant Surgeon	조셉 E. 구티에레즈, MD MA, 이식외과 의사, 미국	미국
86	G. Weldon Gilcrease, MD, Dir. of Oncology, Prof. Univ. of Utah School of Med.	G. 웰던 길크리즈, 의학박사, 종양학 박사, 교수. 미국 유타 의학대학원 대학교	미국
87	R. Scalettar, MD, DSc, Prof. GWU Medical Center, Former AMA Chair	R. 스칼레타, MD, DSC, 교수. GWU 의료 센터, 전 AMA 의장	미국
88	Jeffrey Schlicht, PhD, Prof, Coordinator of Wellness Management Option, Health Promotion Studies, Western Connecticut State Uni.	제프리 슈리히트, 박사, 코네티컷 주립대학교, 미국	미국
89	Debra Holbrook MSN, FNE-A/P, Academy of Forensic Nursing	데브라 홀브룩, MSN, FNE-A/P, 미국 법의학 간호 아카데미	미국
90	David Beyda, PhD, Chair, Dept. of Bioethics/Medical Humanism, Univ. of Arizona	데이비드 베이이다, 애리조나 대학교 생명윤리학과/휴머니즘학과 학장, 박사	미국
91	Arthur L. Caplan, PhD, Mitty Prof. of Bioethics, Dir. NYU Grossman School of Med.	아서 L. 캐플런 생명윤리학 박사 뉴욕 대학교 그로스먼 의학대학원	미국
92	Huige Li, MD, PhD, Prof. of Pharmacology, Univ. Medical Centre, Mainz	휘거리 의학박사, 약학박사, 독일 마인트메디컬센터 대학교 약학 교수	독일
93	David Curtis, MD, PhD, FRCPsych, Hon. Prof. Univ. College London Genetics Institute	데이비드 커티스, 의학박사, FRCPsych Hon. 영국 유전학 연구소 교수	영국
94	Declan Lyons, MD, PhD, Prof. of Psychiatry, Trinity College, Dublin	DECLAN 라이언, 의학박사,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정신의학 교수	아일랜드
95	Martina Schmidhuber, Univ.-Prof. Health Care Ethics University Graz	마르티나 슈미드후버 오스트리아 그라츠 의료윤리대학교 교수	오스트리아
96	Maria Cheung, PhD, Prof. School of Social Work, Univ. of Manitoba	마리아 청 박사,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캐나다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 국가별 VIP 지지 서명 현황

문화예술&언론&종교계	NAME / JOB	성명//직업	국가
97	Rick Halperin, PhD, Director, Human Rights Program, Southern Methodist Uni., former Chair of the Board, Amnesty International USA	릭 핼퍼린 박사, 이사, 전 국제앰네스티 의장	미국
98	Kirk Bloodworth, Executive Director, Witness to Innocence	커크 블러즈워스 무죄 증인 전무이사, 미국	미국
99	Kay Rubecek, Swoop Films, Producer	케이 루벡, 미국 Swoop Films 프로듀서	미국
100	Martin Schoeller, Contemporary Portrait Photographer	마틴 솔러, 미국 현대 초상화 사진작가	미국
101	James D. Crawford, Esq., Board of Directors, Ex Officio - Director Emeritus,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제임스 D. 크로포드 미국 시민 자유 연맹, 이사회	미국
102	Johnnie Moore, Rev., Former Commissioner, U.S. Center for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미국 국제종교자유센터 전 위원 조니 무어 목사	미국
103	Maurice Droin, Journalist	모리스 드로앵(프랑스 저널리스트)	프랑스
104	Thierry Valle, President, CAP Freedom of Conscience	티에리 발레, 프랑스 양심의 자유 CAP 회장	프랑스
105	Minerva Borjas, Singer, Producer.	미네르바 볼하스, 가수, 프로듀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106	Adrian Morales Demori, Award Winning Producer	아드리안 모랄레스-데모리, 수상 경력에 빛나는 프로듀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107	Marco Respinti, Journalist, Essayist, Translator and Lecturer	마르코 레스핀티, 저널리스트, 수필가, 번역가 및 강사,	이탈리아
108	Sister Helen Prejean, Executive Dir., Ministry Against the Death Penalty, Author of Dead Man Walking	헬렌 프레지안 수녀, 미국 사형 반대 작가	이탈리아
109	Antonella Marty, Assoc. Dir., Center for Latin American at Atlas Network, Author	안토넬라 마티, 연합 Atlas Network 라틴 아메리카 센터 이사	아르헨티나
110	Thomas Rohden, Chair Danish China-Critical Society, Human Rights Activist	토마스 로든, 덴마크 인권 운동가, 덴마크 중국 비판 협회 회장	덴마크
111	Anja Zalta, MD, Asso. Prof. Sociology, Univerza v Ljubljani	안자잘타 MD, Ace. 사회학 교수, 유니버시아프 류블자니	슬로베니아
112	Padre Karel Gržan, PhD, Priest, Writer, Publicist, Director, Parish of Luče ob Savinji	슬로베니아 루체오브사빈지 교구장 카렐 신부, 그란잔 박사, 사제, 작가	슬로베니아
113	Willy Fautré, Director of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윌리 포트레(Willy Fautré), 벨기에 국경 없는 인권 이사	벨기에
114	Arne Schwarz, Researcher	아르네 슈바르츠, 연구원, 독일	독일
115	Evelina Tsvetkova, MD,	에벨리나 츠베크코바, MD, 불가리아	불가리아
116	Juris Viļums, Chairman of the Latgalian Cultural Society (NGO)	쥐리스 비움, 랫갈리아 문화회 회장	라트비아
117	Marja Heinonen-Guzejev, MD, PhD, Occupational Health Physician and Post Doc Researcher	마르야 하이노넨-구제예프, MD, PhD 산업 보건 의사, 핀란드	핀란드
118	Larisa Vilsker, Retired Engineer, Daughter of an Auschwitz Survivor	라리사 빌스커, 은퇴한 엔지니어, 이스라엘 아우슈비츠 생존자의 딸	이스라엘
119	Zoé Valdés, Journalist and Author	조 발데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쿠바	쿠바
120	Gerardo de la Concha, Author	제라르도 데 라 콘하, 작가	멕시코
121	Antonio Stango, political scientist and expert international human rights	안토니오 스탄고, 정치학자, 국제 인권 전문가	이탈리아



# UD 지지 서명 메시지

## 1. 영국 상원의원 힐튼(Lord Hylton)경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의 공동 서명자에 제 이름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학적 및 민주국가 의회의 리더들과 함께 끔찍한 관행을 불법화할 것입니다.

## 2. 슬로베니아 유럽의회 의원 밀란 브글레즈(Milan Brglez)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의 공동서명에 참여합니다. 세계 선언문의 내용은 의례적인 형식보다 더 중요하며, 국제법(법률 의식 및 법률 원칙의 표현)의 원천인 국제(EU포함) 인권법의 다른 문서와 같은 보편주의적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 3. 벨기에 하원 의원 아닉 폰티에(Annick Ponthier)

나는 박해와 고문을 받고, 불구가 되거나 투옥됐으며, 더욱 잔인한 학대를 당한 파룬궁 수련자들을 지지합니다. 동시에 저는 모든 희생자들과 모든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박해와 장기적출 관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것을 촉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 세계 모든 연단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 4. 칠레 국회의원 하이메 나란조 오르티스(Jaime Naranjo Ortiz)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관행은 중단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를 범죄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5. 스웨덴 전 유럽의회 의원 니클라스 말베르크(Niclas Malmberg)

중국 정권이 자국민에게 하는 짓은 끔찍합니다. 세계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대한 폭력을 멈추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자국민에 대한 만행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거짓말을 계속하거나 명백한 것을 계속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 6. 브라질 마리오 아부드-필료(Mario Abbud-Filho) 의학박사

상파울루의 상 조제 도 리오 프레토에 있는 FAMERP/FUNFARME 의과 대학병원의 장기이식 센터장으로서 저는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에 서명하고 이를 지지합니다. 제 결정은 도덕적, 윤리적 원칙과 이스탄불 선언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식용 장기나 조직을 목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강요를 비난합니다.

## 7. 폴란드 즈비그뉴 야로체비츠(Zbigniew Jaroszewicz) 의학박사

장기 이식을 위한 장기적출은 사망자나 그의 가족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많은 취재원들이 중국 공산 정권이 강제 장기적출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심수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장기적출을 이유로 처형되었습니다. 특히 잔인한 사례는 살아있는 사람의 각막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의료진들도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이유는 분명하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식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당국에 위협이 될만한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행동은 모든 정직한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합니다.

### 8. 폴란드 테레사 손타 야로체비츠(Teresa Sońta-Jaroszewicz) 박사 Ibero-American

수감자를 대상으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적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어떻게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에게 잔혹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범죄가 중국으로부터 이식용 장기를 매입하는 사람들도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요가 없다면 공급이 없을 것입니다.

### 9. 슬로베니아 마테야 세드막(Mateja Sedmak) 박사

사회 과학자로서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에 서명합니다. 저는 자신의 몸, 삶과 죽음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자 현대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자유 결정과 불가침의 권리는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나이, 성별 및 기타 특징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무지의 상태에서 이식, 인신매매 및 수입을 목적으로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장기 적출에 대한 모든 비윤리적인 관행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인간공동체로서 과학의 엄청난 진보와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관행의 윤리적, 도덕적 논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것은 다소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투쟁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강제로 적출된 장기를 매입한 국가와 개인 모두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 10. 불가리아 전 국회의원 이반 이바노프(Ivan Ivanov) EWRC 의장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을 단호하고 확신 있게 지지합니다. 강제 장기적출은 존중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간 가치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고발되어야 합니다. 강제 장기적출은 인간 행동의 틀을 벗어난 행동이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든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저는 주저 없이 이 선언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 장기적출이 수년 전부터 이뤄지고 있는 중국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 11. 불가리아 에벨리나 츠벤토코바(Evelina Tsvetkova) 의학 박사

“장기 이식은 (의료 전문가와는 별개로) 가장 인간적인 행위(사후 장기 기증)와 함께 사회 전체를 포함하는 유일한 의료 활동입니다. 장기기증은 의식적인 결정에 의한 행동이며 엄격한 규칙 하에서 행해집니다.

따라서, 이식을 목적으로 인간 장기를 강제로 제거하려는 시도는 비난받아야 하며 기소되어야 합니다.

불가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장기매매 및 장기이식 관행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타적인 장기 기증은 장기 수여자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12. 라트비아 마르티쉬 시시스(Mārtiņš Šics) 의학 박사

장기이식을 위해 살인의 방식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것을 승인한 중국 정치인들은 비인간적이며,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단지 합법적인 인육보다만 나을 뿐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은 장기나 조직 기증자가 아닐뿐더러 그렇게 간주되서도 안됩니다. 이는 의료윤리, 도덕성, 도덕적 가치관의 모든 규범과 가치에 반합니다. 어떠한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며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의 요구들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KAEOT**

Korea Association for Ethical Organ Transplants

사법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www.kaeot.org](http://www.kaeot.org)